

2021년 「비대면 서비스 바우처」 수요기업 모집 공고

포스트 코로나 시대, 중소·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「비대면 서비스 바우처」 사업의 '수요기업'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1년 1월 29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

모집개요

- 사업목적 : 화상회의,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
- 모집대상 : 중소기업
- 모집규모 : 60,000개사 내외
- 모집방식 :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
- 지원내용 : 비대면 서비스 도입·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**400만원**(자부담 10% 포함) 이내 바우처 지급
- 지원방식 : 바우처 방식
 -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'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(www.k-voucher.kr)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 후, 결제·이용
 - * 지원 중 휴·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,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

- 지원조건 :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%(기업당 최대 360만원)까지 지원하며,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
- 서비스 제공 분야(안) :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, 재택근무, 보안 솔루션, 온라인 교육 등

< 제공 서비스 분야 >

비대면 서비스 분야	세부 내용
① 화상회의	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
② 재택근무(협업 Tool)	기업 내 임·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 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
③ 네트워크·보안 솔루션	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
④ 에듀테크	에듀테크를 활용한 기업 내 직원을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및 초·중·고등 학생용 온라인 교육서비스
⑤ 돌봄 서비스	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
⑥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	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·노무, 보안전략 컨설팅

* "⑤돌봄 서비스", "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"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(①~④)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(동시 이용하거나 다른 서비스(①~④)를 먼저 이용한 후 선택 가능)

* 키오스크, 발열체크기 등 장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

2

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자격

○ (신청자격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- '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'21년도에 재신청 불가
- 다만, 장애인·여성기업은 '20년도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'21년도 사업에 재신청 가능(여성기업 확인서,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수)
-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(법인, 사업체)은 1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※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예외 :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

* 예외 :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③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*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(기업)

No	대상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
1	일반유희주점업	56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

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대표자 및 기업)

☞ ①, ②의 '예외'에 해당되는 자(기업)는 신청 시, 관련 증빙 필수 제출

□ 서비스 신청

- (바우처 결제수단 발급) 선정된 기업은 '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 (www.k-voucher.kr)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

■ 바우처 결제수단 : 바우처카드(신한 체크카드·선불형카드) 또는 바우처상품권(선불 충전식 모바일상품권) 중 택일

①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

-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
-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(기업은행, 우체국, 농협,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)
- 선불형카드는 온라인 발급(실물카드 미발행)되며 바우처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

② 바우처상품권을 이용할 경우

- 바우처상품권(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)은 "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" 및 "비플제로페이(어플리케이션)" 회원가입 필요

- (서비스 선택) '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,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

*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(예시: 화상회의+재택근무+네트워크보안+에듀테크)

- (서비스 신청) 필요한 서비스를 '장바구니(예약 기능)'에 담고,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

* 수요기업 선정 후 **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선택·결제**하여야 하고, **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**

** 과기부(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), 고용부(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)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**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**

***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,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

□ 바우처 사용

- (공급기업 확인)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

- (기업부담금 입금) 플랫폼 내 '결제하기' 클릭 전,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기업부담금(결제 대금의 10%)을 입금

※ 단, 선불형카드 또는 바우처상품권(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)의 경우 기업부담금(40만원)을 가상계좌로 선납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

- (서비스 이용 결제) 바우처카드(체크카드, 선불카드) 또는 간편결제(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)로 '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에서 결제

-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므로, 바우처 400만원으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

(예시: 'A기업 재택근무 서비스 200만원 + 'B기업 네트워크보안 서비스 200만원 = 400만원)

☞ '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이 '21.2.10일(예정)* 이후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됨

* 정확한 날짜는 플랫폼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

- (서비스 이용)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,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. 다만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
□ 바우처 결제 기한 :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하고,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

-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,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잔액은 환수조치됨

* 바우처 결제후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대 24개월 범위내에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계약에 따라 설정

4

신청 및 선정 절차

□ 신청기간 : 2021년 2월 16일(화) ~ 예산 소진 시까지

*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,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: 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(www.k-vouche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<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온라인 신청절차 >

① 플랫폼 접속 →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→ ③ 로그인 정보 입력 → ④ 대표자 또는 담당자(임직원) 체크[담당자(임직원) 체크시 "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" 첨부] → ⑤ 기업정보(대표자 정보 포함) 입력 → ⑥ 제출서류 업로드 → ⑦ 담당자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→ ⑧ 운영기관 선택 → ⑨ 사업 활용계획 입력(2가지 분야 이상 선택, 200자 이상 기입) → ⑩ 제출

* 사업신청 및 본인인증은 기업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(소속 직원)에 한하고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신청할 수 없음(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 금지)

*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(법인, 사업체)은 1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함

* 신청시 이용 서비스 분야를 선택(2개 이상 복수 선택가능)하고 분야별 서비스 활용 계획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함

□ 제출서류 : 아래 서류 업로드

구분	제출서류(사본 가능)	
필수	㉓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공통
	㉔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대표자 및 기업)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	
	㉕ 법인등기부등본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	법인인 경우
선택	㉖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	직원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* 대표자가 직접 신청시 생략가능
우대	① 장애인기업확인서 ② 여성기업확인서	'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한함

* 우대사항 ①, ②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

** ㉔~㉖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*** 중소기업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,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신청기업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****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(본인 확인 불가 등)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

< 신청 시 유의 사항 >

- ① 최종 '제출완료'한 신청자 순으로 요건, 서류 등을 검토한 후, 선정 예정
- ② 접수마감 후,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
-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,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

□ 지원대상자 확정

- **요건검토** : 신청한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
- **지원대상자 확정** : 운영기관은 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
 -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비스 활용계획 등을 참조하여 서비스 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신청목적이 본 사업과 불일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거쳐 탈락처리 할 수 있음

< 지원대상자 확정절차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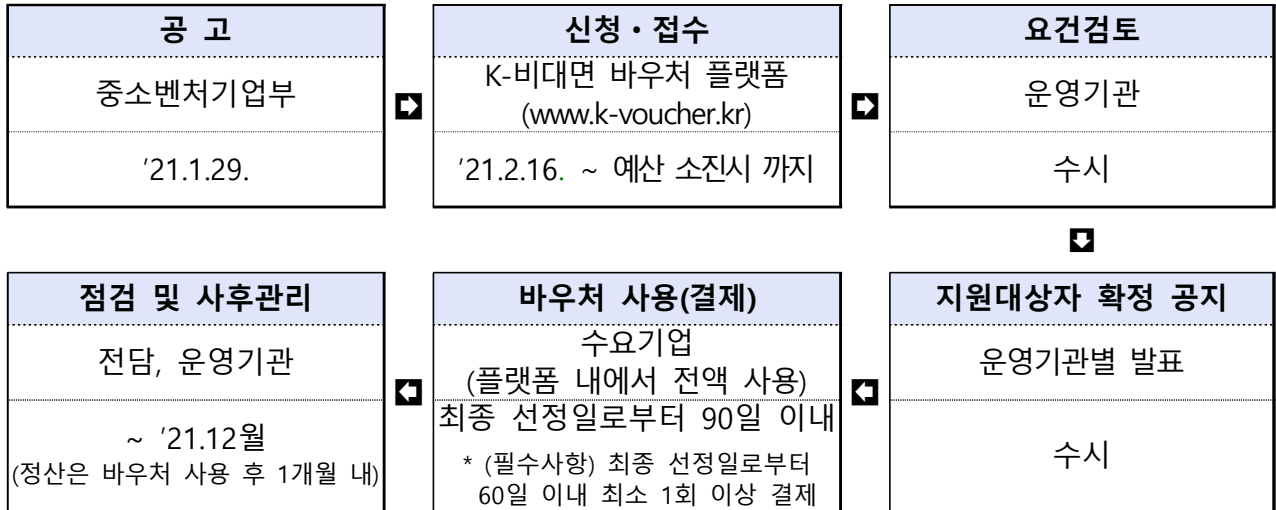
평가단계	수행기관	수행내용
신청접수	운영기관	·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 제출
▣		
요건검토	운영기관	· 신청자격, 신청(지원)제외 요건 등 확인 (우선 신청자 순)
▣		
지원대상자 확정	운영기관	· 지원대상자 확정 공지

5

추진절차 및 일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※ 세부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6

유의사항

◆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(기업)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.
- ③ 중소기업부는 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” 제32조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선정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
□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(본인 확인 불가 등) 할 경우, 탈락 처리될 수 있음

-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 또는 소속 실무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을 해야 하고, 소속 실무자가 신청 할 경우 ① 사업장 대표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② 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”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.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하여서는 아니되고,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함
- 선정된 수요기업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, 서비스 이용·제공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과 동시에 공고문에 명시된 목적으로 바우처를 이용(집행)하여야 함
 - * 지침은 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(www.k-voucher.kr) 공지사항에 게시, 약관 동의는 '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에서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진행
- 선정된 수요기업은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므로, 바우처 400만원으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
- '20년 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이 '21.2.10일(예정) 이후에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개 공급기업에 대한 최대 결제 가능금액이 200만원으로 제한됨
- 선정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서비스 결제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, 금품 등 수령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,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
- 과기부(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사업, ICT 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사업 등), 고용부(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등) 등의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함. 또한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동 사업의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거나,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동 사업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음. 중복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,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음

- 선정된 수요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, 전담기관,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(정부지원금)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(사용목적)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,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(R&D, 융자 등) 참여 제한,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
- 선정된 수요기업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·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요기업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·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□ 사업 신청 문의

- 사업 신청, 심사, 선정 및 바우처 이용관련 문의 : 4개 운영기관

연번	기관명(가나다 순)	담당자 연락처
1	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	042-368-9713 042-368-9723
2	벤처기업협회	02-6331-7081, 02-6331-7149,50 02-6331-7083
3	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이노비즈협회)	031-628-9694 031-628-9656
4	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(메인비즈협회)	02-2230-2152

- 결제수단 신청, 발급, 결제오류 관련 문의

연번	기관명(가나다 순)	담당자 연락처
1	신한카드(체크카드, 선불카드)	1544-7000
2	한국간편결제진흥원(제로페이)	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-0582

- 시스템(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) 문의 : 유파운드(02-6093-3500)

참고 1

제출서류 발급 및 문의처

분류	제출서류명(사본 가능)	발급처
필수서류	㉓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	㉔-1 국세 완납증명서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	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	㉔-2 지방세 완납증명서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	주민센터 또는 정부 24(https://www.gov.kr)
	㉕ 법인등기부등본(법인만 해당)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	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선택서류	㉖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(직원이 신청하는 경우) * 대표자 직접 신청시 생략 가능	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
우대서류	① 여성기업확인서 (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한함)	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
	② 장애인기업확인서 (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한함)	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
<p>※ 우대사항 관련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,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신청기업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</p>		